



목 포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·점검 사항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62조 개정에 따라 2025. 8. 17.부터 구비의무기관이 점검 결과를 통보*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- *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 및 불임의 관리지침에 따른 **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 →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(<http://portal.nemc.or.kr>)에 점검 결과 등록**
3.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(AED)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 및 점검방법_매뉴얼 1부. 끝.

목 포 시 장

수신자 구비의무기관 227개소

주무관	김지희	의약관리팀장	박수란	보건위생과장	박윤희	전결 2025. 4. 7.
협조자						
시행	보건위생과-8032			접수		
우	58714	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, (산정동)			/ http://www.mokpo.go.kr	
전화번호	061-270-8905	팩스번호	061-270-3597	/ jh2778@korea.kr		/ 대한민국 공개
소중한 내 삶을 지키는 방법,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합시다!						